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3698 판결 [(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반 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도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684,3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와 2021년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본급은 25,0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발굴 및 성사시키는 계약 건당 5% 내지 10%의 인센티브를 대상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395,490,000원 상당의 팔레타이징 로봇 자동화시스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7%(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7,684,300원을 원고로부터 2021. 10. 8.부터 12. 30.까지 사이에 모두 지급받았다2).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에 대하여 “원고가 견적서 작업 및 제안작업을 참여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제안한 D의 견적서 등을 배제하고 C가 지정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체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한 인센티브 27,684,3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센티브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센티브는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법적 및 사실적 관계를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자의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받은 공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그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임의로 지급하여야만 하였는지 의문이다). 즉 위와 같은 자발적 지급이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돈은 합의된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에게 인센티브 청구권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포함하여 피고가 받은 인센티브 27,684,3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 1) 본소인 2021가단130913호 사건은 취하로 종료되었다.
- 2) 원래 피고가 본소로 청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부분 본소를취하하였다.